

학교법인 예수대학교

2020학년도 제 7차 이사회의록

- 회의 소집일 : 2020년 10월 20일
- 개최 일시 : 2020년 11월 5일(목) 오후 6시
- 장 소 : 예수대학교 대학본부 3층 회의실
- 개최예배 : 찬송-370장, 성경-로마서 8:38-39
기도-이숙재 이사

구 분	이사	감사	계
임원 정수	12	2	14
재적 임원	9	2	11
출석 임원	7	1	8
결석 임원	2	1	3

1. 출석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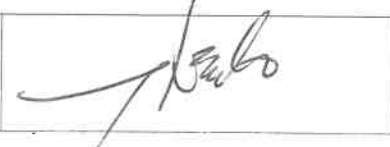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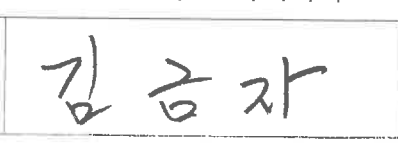
참석이사	김성길, 이철호, 김철승, 이숙재, 김금자, 조진웅, 백수경	7명
결석이사	정남식, 정성후	2명
참석감사	양병철	1명
결석감사	박진섭	1명
배석자	박용선 사무국장	1명

2. 안 건 :

제 1호 의안	정남식 이사 후임 선임(안)
제 2호 의안	교육 이사 선임(안)
제 3호 의안	정관시행세칙 개정(안)
제 4호 의안	총장 선임에 관한 규정 제정(안)
제 5호 의안	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안)
제 6호 의안	기타(안)
	가.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자 지명

3. 성원확인 및 개회선언 : 이사장이 재적이사 9명 중 7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한 후 개회를 선언하다.

4. 전차회의록 접수 : 이사장이 전 회의록(2020.10.15)의 처리여부를 묻자, 원안대로 접수하기로 조진웅 이사의 동의와 이숙재 이사의 재청으로 의장이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처리하다.

		
---	---	--

5. 회의내용 :

제 1호 의안 : 정남식 이사 후임 선임 안

- 이사장이 2020.11.14 일자로 임기가 종료되는 정남식 이사의 후임 선임을 위해 본 안건이 상정되었음을 설명하고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아래 2명의 후보를 심의 요청하다.

- 아 래 -

성 명	현직 및 주요경력
김 한 주	- 전북 신세계병원 병원장 - 기독교감리회 성은교회 장로
윤 용 순	- 예수병원 기획조정실장 - (사)국제의료협력단 사무총장

- 심의 후, 2020.11.14.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정남식 이사 후임으로 윤용순을 선임하자는 이숙재 이사의 동의와 조진웅 이사의 재청으로 이사장이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2020.11.14. 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정남식 이사 후임으로 윤용순 선임 이사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하다.

제 2호 의안 : 교육이사 선임(안)

- 이사장이 교육이사로 선임되었던 정남식 이사의 임기종료에 따라 후임 교육이사 선임을 위해 본 안건이 상정되었음을 설명하고 추천을 요청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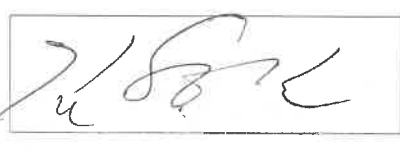
- 논의 후 신임 이사로 선임된 윤용순 이사가 교육 경력을 갖춘 자이므로 후임 교육이사로 선임 하자는 조진웅 이사의 동의와 백수경 이사의 재청으로 이사장이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정남식 교육이사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교육이사로 윤용순 이사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하다.

제 3호 의안 : 정관시행세칙 개정(안)

- 이사장이 정관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니 박용선 사무국장이 아래와 같이 설명 하다.

- 아 래 -

1) 개정사유 :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 구분의 실익이 없어 이사회로 용어를 통일하는 것과 이사회 개최 내용을 대학구성원에게 공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정관시행세칙을 개정하고자 함.

		김 훈 자
---	---	-------

2) 신규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 2조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 정기 이사회는 년 2회, 임시이사회는 규정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 2조 (이사회) <u>정관 제27조 제2항의 사항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다.</u>
제 3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삭제"	제 3조 (이사회 소집 공개) <u>정관 제30조에 의해 소집된 이사회는 이사회 개최 전까지 대학 홈페이지에 소집에 관한 내용을 공개한다.</u>
제 4조 (회의록 작성) 이사회의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간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 4조 (회의록 작성) 이사회의 회의록은 <u>법인 사무국장이 작성</u> 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부칙 이 세칙은 2020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논의 후 정관시행세칙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조진웅 이사의 동의와 이숙재 이사의 재청으로 이사장이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정관시행세칙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제 4호 의안 : 총장선임에 관한 규정 제정(안)

- 이사장이 총장선임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니 박용선 사무국장이 아래와 같이 설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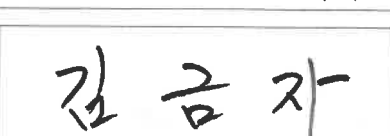
- 아 래 -

1) 제정사유 : 이사회 의결에 따라 관례적으로 시행했던 총장 선임의 절차와 방법을 명문화하여 총장 선임 원칙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시행하기 위해 총장선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2) 규정전문

총장 선임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예수대학교(이하 "법인"이라고 함) 정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예수대학교 총장 선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임기한) ①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30일전까지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총장이 유고로 공석이 된 때에는 9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총장의 1회 재직 기한으로 간주한다.

③총장 유고 시 15일 이내에 이사회 의결로 직무대행자를 지명하고, 그 임기는 후임 총장의 선임일 전날까지로 한다. 단, 유고된 총장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제2항과 관계없이 직무대행자로 하여 총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총장의 요건) 총장은 도덕성과 공익성을 갖추고 예수대학교의 건학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자 중에서 선임한다.

1. 대학의 설립이념을 이해하고 정통성을 유지발전 시킬 수 있는 자
2. 대학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자
3. 대학의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
4. 대학의 발전기금 및 재정확충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자
5. 대학의 구성원들과 원활한 소통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자
6. 대학의 국제화 전략 및 실행방안이 있는 자
7. 지역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제4조(총장응모 자격) 총장 초빙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한다.

1. 만 70세 미만인 자로 사립학교 교원 자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 박사학위 소지자
3. 개신교 정통 교단의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

제5조(총장 선임 원칙 및 예외) ① 총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함)에서 추천된 2배수 이상의 예비 후보 중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총장의 공고는 대학홈페이지와 일간지(1개 이상)에 게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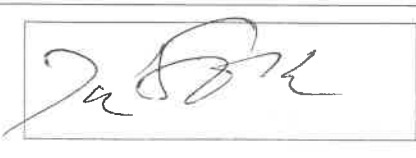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총장을 선출한다.

1. 보선으로 인한 총장 선임 시 그 잔여임기가 1/2 이하가 되지 못하는 경우
2. 총장 임기 만료 전 연임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3. 총장추천위원회로부터 기한 내 총장후보의 추천이 없을 경우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은 7인으로 하며, 이사회의 의결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위원회 구성 시부터 이사회의 총장 선임 의결시

		김금자
---	---	-----

까지로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출석이 어려울 경우 사전 지명한 위원이 임시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총장 후보자가 될 수 없다.

④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는 법인사무국으로 하며, 간사는 법인사무국장이 담당한다.

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예산은 법인 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장 공고 내용 및 방법
2. 총장 후보 서류 점검 및 사실 확인 요청
3. 총장 후보 면접 질문 작성 및 질의
4. 총장 후보의 추천
5.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원회 의결) 위원회는 과반수로 개최하며, 참석이사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11조(총장후보추천 기한) 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총장 후보를 추천하여야 한다. 단, 기한 내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까지 기한의 연기할 수 있다.

제12조(총장후보추천 일정) ① 위원회는 구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총장 초빙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총장 초빙 공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4일로 한다.

③ 총장후보자의 서류 심사(1단계)는 공고 마감일 1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단, 서류 내용의 사실관계확인 등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7일까지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④ 총장후보자의 정책 발표 평가(2단계)와 심층면접(3단계)은 1단계 심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실시하여 한다.

제13조(심사평가) ① 서류심사(1단계) 평가는 적정과 부적정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1단계 평가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총장 지원자는 2단계 평가를 실시할 수 없다.

② 2단계 평가는 총장 지원자의 정책 발표와 질의 응답을 통해 평가한다.

③ 3단계 평가는 위원회의 심층 면접으로 평가한다.

제13조(총장후보추천) 위원회는 총장후보자 정책발표 평가 및 심층면접 완료 후 10일 이내에 총장 후보자를 2배수 이상 서면으로 추천한다.

제14조(기밀유지) 위원회의 위원은 총장 후보 추천과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사항을 기밀로



김금자

하여야 한다.

제15조(이사회 총장 선임) 이사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총장 후보 추천 경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이사회는 심의를 거쳐 총장으로 선임 의결한다.

제16조(규정 개정 및 해석)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로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논의 후 총장선임에 관한 규정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이철호 이사의 동의와 김철승 이사의 재청으로 이사장이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총관선임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제 5호 의안 : 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안)

- 이사장이 제정된 총장선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장 선임에 관한 방법과 절차를 담당할 총장 후보추천위원회(7인)를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 추천을 요청하다.

- 논의 후 총장후보추천위원회로 김성길 이사장, 김철승 이사, 이철호 이사, 조진웅 이사, 양병철 감사, 이상 법인 대표 5인과 동문대표 및 교직원 대표 각각 1인을 포함하여 총 7인으로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백수경 이사 동의와 이숙재 이사 재청으로 이사장이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차기 총장 선임을 위한 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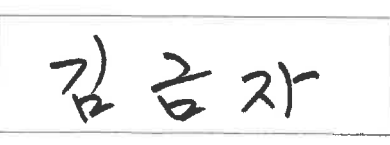
제 6호 기타 안건

가.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자 지정

- 이사장이 사립학교법 제18조의 2 제2항에 의거 이사회회의록 간서명자의 추천을 요청하니, 김성길 이사장, 김철승 이사, 김금자 이사 이상 3인으로 하자는 이숙재 이사의 동의와 이철호 이사의 재청으로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참석 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의결하다.

6. 폐회 선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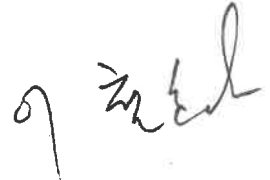
- 이사장이 폐회 성안을 요청하니 이철호 이사의 동의와 조진웅 이사의 재청으로 이사장이 가부를 물어 참석 이사 전원의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폐회를 선언하니 19시 25분이었다.

		
---	---	--

학교법인 예수대학교 이 사 장 김 성 길



이 사 이 철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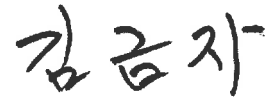
이 사 김 철 승



이 사 이 숙 재

이 숙 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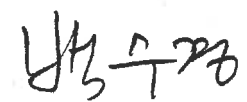
이 사 김 금 자



이 사 조 진 응



이 사 백 수 경



감 사 양 병 철



김 금 자